

## 2-4.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: 목욕장업(목욕탕, 찜질방)

### 1. 이용자

#### [공통사항]

-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
- 다른 사람과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
-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
-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, 옷소매로 입 가리기
- 침방울이 튀는 행위(노래부르기, 소리지르기 등)나 신체접촉(악수, 포옹 등) 자제하기
-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(단, 물속에서는 제외)
-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
#### [해당 유형 적용사항]

### 1. 목욕탕, 사우나

- 코로나19 임상증상(발열, 기침, 호흡곤란, 오한, 근육통, 두통, 인후통, 후각·미각 소실 등)이 있거나 의심증상자와 동거하는 자는 방문하지 않기
  - 고위험군(65세 이상 어르신, 임산부, 만성질환자 등)은 방문 자제하기
- 출입 시 증상 여부(발열, 호흡기 증상 등) 확인, 청소·소독·환기 등을 위한 퇴장 요구 등 방역에 협조하기
- 탈의실, 샤워실 등 공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혼잡한 시간을 피하고, 대화는 자제하며, 다른 사람과 한 칸 떨어져 사용하는 등 거리 두기 유지하기
- 목욕탕 외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하기
- 목욕탕과 탈의실 내 음식 섭취 또는 대화하지 않기
- 공용물품(드라이기, 빗, 로션 등)은 사용하지 않고, 가능한 개인용품 사용하기
- 가급적 선풍기 등 사용하지 않기

## ② 찜질방

- 코로나19 임상증상(발열, 기침, 호흡곤란, 오한, 근육통, 두통, 인후통, 후각·미각 소실 등)이 있거나 의심증상자와 동거하는 자는 방문하지 않기
  - 고위험군(65세 이상 어르신, 임신부, 만성질환자 등)은 방문 자제하기
- 출입 시 증상 여부(발열, 호흡기 증상 등) 확인, 청소·소독·환기 등을 위한 퇴장 요구, 명부(전자 또는 수기) 작성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 등 방역에 협조하기
-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하기
- 공용공간 내에서는 다른 사람과 2m(최소 1m) 이상 거리를 유지하기
- 목욕탕, 찜질방 외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하기
- 공용물품(베개, 매트, 안마의자, TV 리모컨 등)은 비치된 소독제로 사용 전·후 표면 소독하기
- 지정된 장소 외의 공간에서 음식 섭취하지 않기
  - 지정된 장소에서는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아 대화하지 않고 섭취
- 찜질방 내 부대시설(음식점, PC방, 오락실, 마사지실 등)은 가능한 이용 자제하기
  - 불가피한 경우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, 마스크 착용, 손 소독, 대화하지 않기
  - 노래방 기기는 이용하지 않고, 유아·어린이는 pc방, 오락실, 놀이방 이용하지 않기
- 오랜 시간 동안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고, 사람 간 거리 유지가 어려운 밀폐된 공간(수면실 등)은 가급적 이용하지 않기
- 가급적 선풍기 등 사용하지 않기

※ 찜질방이 함께 있는 목욕탕은 ① 목욕탕, 사우나 적용사항 준용

## ② 책임자·종사자

### [공통사항]

-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
-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, 동일 장소 등에 2~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~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,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
-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

- 사람 간 간격을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
-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,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
-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,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기
-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(출입구 손잡이 등)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
- 고객(이용자)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-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
-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(단, 물속에서는 제외)
-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

### [해당 유형 적용사항]

#### ① 목욕탕, 사우나

-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 여부(발열, 호흡기 증상 등) 확인 등 방역 관리하기
- 코로나19 임상증상(발열, 기침, 호흡곤란, 오한, 근육통, 두통, 인후통, 후각·미각소실 등)이 있거나 유증상자와 동거하는 자는 방문하지 않도록 안내하고, 고위험군은 이용을 자제할 것을 안내하기
  - \* 고위험군: 65세 이상 어르신, 임신부, 만성질환자 등
- 목욕탕 외 탈의실 등에서 마스크 착용하도록 안내하기
- 개인 위생수칙 준수, 생활 속 거리 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 교육·안내하기
- 이용자들이 시차를 두고 분산 이용하고 밀집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하기
  - 예) 시간 예약제, 이용자 간 2m(최소 1m) 거리 두기가 가능하도록 이용 인원 제한 등
- 공용공간 내에서는 다른 사람과 2m(최소 1m) 이상 거리를 유지하도록 안내하기
- 공용물품(드라이기, 빗, 로션 등)은 가능한 비치하지 않고, 개인용품 사용하도록 하기
- 영업 전·후로 탈의실·휴게공간 등 환기 및 시설 소독하기(소독 관리대장 작성)
  - 소독·청소·환기 시간을 미리 정하여 잘 보이는 곳에 안내하기
- 가급적 비치된 선풍기 등은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하기
- 목욕탕과 탈의실 내 음식 섭취 또는 대화하지 않도록 안내하기

## ② 찜질방

- 찜질방 내 사람 간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하도록 입장 인원 관리하기
  - \* 예시: 바닥면적 4㎡ 당 1명 등
-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 여부(발열, 호흡기 증상 등) 확인 및 명부(전자 또는 수기)를 작성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하기
- 코로나19 임상증상(발열, 기침, 호흡곤란, 오한, 근육통, 두통, 인후통, 후각·미각소실 등)이 있거나 유증상자와 동거하는 자는 방문하지 않도록 안내하고, 고위험군은 이용을 자제할 것을 안내하기
  - \* 고위험군: 65세 이상 어르신, 임신부, 만성질환자 등
- 목욕탕, 찜질방 외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하기
- 찜질방 내 곳곳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, 손 소독 안내하기
- 음식 섭취 장소를 지정하고, 해당 장소 외에는 음식 섭취 금지 안내하기
  - 지정된 장소에서는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아 대화하지 않고 섭취하도록 안내하기
- 찜질방 내 사용하는 베개, 매트는 개인별로 사용하도록 배부하기
  - 1인 사용 후에는 회수하여 표면 소독하기
- 이용자가 안마의자, tv 리모컨 등 사용 전후 소독할 수 있도록 소독제 비치하기
- 영업 전·후로 탈의실·휴게공간 등 시설 소독(소독 관리대장 작성)하고, 찜질방 내 안마의자, tv 리모컨 등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은 자주 소독하기
- 찜질방 내 부대시설(음식점, PC방, 오락실, 마사지실 등)은 가능한 운영 자제하기
  - 불가피한 경우, **(음식점)**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, 음식 섭취 전·후 마스크 착용, 대화 자제 안내하고, 손이 자주 닿는 표면(메뉴판 등)은 주기적 소독하기(1일 1회 이상)
  - **(pc방, 오락실)** 마스크 지속 착용, 음식 섭취 금지, 대화자제 안내하고, 손이 자주 닿는 표면(키보드, 마우스, 게임기, 스틱기 등)은 자주 소독하기(1일 1회 이상)
  - **(마사지실)** 종사자 마스크 착용, 손님과 대화 하지 않기, 손님도 가능한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, 마사지실 내 입장 인원 관리하여 밀집도 조절하기
  - **(놀이방)** 공용 장난감 등 공용물품 비치하지 않기, 놀이기구의 표면(트럼폴린 등)은 자주 소독하기(1일 1회 이상)
  - **(노래방기기)** 노래방기기 등은 이용하지 않도록 안내하기
  - **(유아·어린이)** pc방, 오락실, 놀이방 이용하지 않도록 안내하기

- 불가피한 경우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, 마스크 착용, 손 소독, 대화하지 않기
- 오랜 시간 동안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고, 사람 간 거리 유지가 어려운 밀폐된 공간 (수면실 등)은 가급적 운영하지 않기
- 가급적 비치된 선풍기 등은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하기
- ※ 찜질방이 함께 있는 목욕탕은 ① 목욕탕, 사우나 적용사항 준용
- ※ 시설 내 부대시설(음식점·카페, 공중화장실, PC방 등)은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